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6. 4. 3(수)

내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3. 21
- 나. 제출자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기획감사실장)
- 다. 회부일자 : 1996. 3. 22
- 라. 상정 및 의결
 - 제4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의회(임시회)
 -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: 1996. 4. 1
 -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: 1996. 4. 1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김치권)

- 가. 제안사유
 - 저소득계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보건소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된 재가 방문복지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
 - 의료보호업무가 방문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.
- 나. 관련근거
 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5조 제5항
- 다. 주요골자
 - 6개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녀봉사관(6명)을 보건소로 정원조정
 - 구본청에서 1명을 보건소로 정원조정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 황정근)

본 조례(안)은 영세민집단지역의 고충처리 및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부녀봉사관을 채용한 이후 도시의 비대화 및 저소득시민 복지수요변동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소 의료서비스의 일원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6개동에 분산 근무하는 부녀봉사관 별정8급 6명과 구본청(사회복지과) 행정8급 1명을 보건소(방문복지과)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답변자 : 기획감사실장 김치권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녀봉사관을 보건소로 전보시 동사무소의 인력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?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말기 암환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방문할 경우 간호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개선책이 없는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부녀봉사관을 보건소로 전보시 부녀봉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까지 같이 이관하게 될 것이므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사료됨. 87년도 부녀봉사관 채용당시에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정부시책 홍보등을 부녀자를 상대로 한 정부시책 홍보등을 위하여 채용하였으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자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요보호노인, 말기암환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
5. 토 론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